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4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박수영·서천호·이종욱

송언석 · 김미애 · 강승규

박충권 · 조배숙 · 유용원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대부업자 등이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 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 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 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 려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 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불법・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3조의6, 제5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6(우수대부업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이하 "우수대부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정한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경우
-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우수대부업자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우수대부업자 지정·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를 "대부", "생활금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못한다"를 "못하며,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생활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한다.

다만,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는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로 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부, 대부중개"를 "대부, 생활금융, 대부거래"로 한다.

2의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6에 따른 우수대부 업자로 지정된 자

제21조제1항제2호 중 "'대부""를 "'대부", "생활금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 등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후 제3조의2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1. <u>1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②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2. <u>1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	<u>-</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의6(우수대부업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이하 "우수대부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정한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 업자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우수대부업자로 지정 된 경우
-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 7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 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 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 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받은 경우</u>
4. 그 밖에 우수대부업자 지정
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④ 우수대부업자 지정·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u>다만, 우수대부업자</u>
로 지정된 대부업자는 "생활금
<u>융</u> "이라는 문자로써 이를 갈음
<u>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대부", "생활금융"

4	\circ	법이	에 따	른디	귀부약	날자.	등ㅇ	
아	긘 >	자는	ユ	상호	중여	에	귀부	,
대기	부중	개	또는	이오	구 유	사힌	는 정]- }
호	를 ㅅ	나용	하지	못한	다.			

⑤ (생략)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설></u>

- 3.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u>대부, 대부중개</u>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 용한 자

(<u>4</u>)
대부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생활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하지 못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6에 따른 우
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1
<u>대부, 생활금융,</u>
대부거래

1의2. ~ 10. (생략)

③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 12. (생략)
- ②·③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u>.</u>
1. (현행과 같음)
2
"대부",
 "생활금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